

tapestry

주식회사 태피스트리의 공급업체 윤리강령 TAPESTRY, INC. Supplier Code of Conduct

태피스트리의 모든 브랜드, 그 자회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주식회사 태피스트리(이하 “당사” 또는 “태피스트리”)는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권 존중의 책임을 인정하며 선량한 글로벌 시민정신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전세계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기업이 모든 해당 법·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을 공정하게 위임과 존중으로 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고, 당사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높은 기준을 따르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 **공급업체 윤리강령(Supplier Code of Conduct)**을 제정했습니다. 태피스트리는 위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며 당사가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모든 기업들이 본 공급업체 윤리강령을 준수하리라 기대합니다. 본 공급업체 윤리강령은 주식회사 코치의 공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Coach, Inc. supplier selection guidelines)에 우선합니다.

“공급업체”란 협력업체, 합작회사 파트너, 원자재 공급업체 등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 당사와 거래하는 공급업체가 이용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1. 윤리 기준

당사는 윤리적인 사업 행위에 대한 높은 기준을 따르며 엄격한 관행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들과만 거래합니다.

2. 법적 요건

당사는 당사가 사업을 운영하고 영위하는 곳의 모든 법·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공급업체와 고의로 거래하거나 그러한 공급업체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반부패

당사는 진실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공급업체와 거래합니다. 1977년 제정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기타 관련 국제법에 따라 공급업체는 뇌물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적절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태피스트리의 공급업체는 그 어떠한 이에게도 해당

공급업체나 당사의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가치 또는 기타 혜택 또는 무엇이든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지급, 지급 약속, 지급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태피스트리가 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선임한 제 3자 대리인의 객관성에 영향을 주려는 모든 시도도 포함됩니다. 당사의 반부패 정책은 [www.tapestry.com/investors/의 글로벌 비즈니스 윤리 프로그램\(Global Business Integrity Program\) 섹션](http://www.tapestry.com/investors/의_글로벌_비즈니스_윤리_프로그램(Global_Business_Integrity_Program)_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OFAC 준수

당사는 공급업체가 미국 재무부 산하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해외자산통제국)이 운영하는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SDN List)에 명시되어 있거나 OFAC 제재 대상인 국가, 개인 또는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대행하거나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5. 북한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는 1930년 제정된 관세법 제307조에 따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북한 시민이나 국민이 만든 상품, 제품, 물품 및 물건은 강제 노동 물품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atrol)에 의해 강제 노동 및/또는 교도소 노역으로 생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상품의 선적은 미국의 모든 통관항에서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북한 국민이나 시민이 당사의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고용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사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의 기존 검증 과정 및 절차를 활용할 것입니다.

당사의 공급망 점검 방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에 관한 당사 정책과 관련된 관행에 대해서는 제8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환경 요건 및 지속가능성

당사는 환경에 대한 당사의 의지를 공유하고 해당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관행을 추구하는 공급업체와 거래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급업체가 불이행한 환경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관련 계획과 프로그램을 지체없이 수립 및 이행하리라 기대합니다. 이는 모든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정 준수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향후 규정이 변경되어 감에 따라 당사는 당사의 공급업체들이 새로운 환경 규정을 준수하리라 기대합니다.

지속가능성은 오랫동안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의 일부를 차지해 왔습니다. 당사는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사의 전략과 의지가 기술되어 있는 연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www.tapestry.com/investors/의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분쟁 광물

당사는 미국 상장기업으로서 그 제품의 기능에 필요한 “분쟁 광물”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분쟁 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에서 채굴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3TG)을 의미합니다.

연례 분쟁광물 설문조사 진행 시 공급업체는 당사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3TG와 해당 제련소를 당사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공급업체들이 3TG 조달 시 분쟁이 없는 인증된 출처를 모색할 것을 장려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tapestry.com/investors/> [분쟁 광물 정책\(Conflict Minerals Policy\)](#) 섹션에 게재된 테피스트리 분쟁 광물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SB 657)과 영국의 2016 현대판 노예제법에 따라 테피스트리는 노예 인력을 활용하거나 인신매매를 지원하는 공급업체를 고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사의 정책은 <http://www.tapestry.com/california-transparency-act-uk-modern-slavery-act-statement/> 및 <https://www.katespade.com/katespade-customer-service-ks-privacy-and-security/ks-ca-supply-chains-act.htm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하청 계약 요건

공급업체가 자체 생산 능력이 있는 경우 생산 과정의 일부를 하청업자에게 외주를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산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회사명, 주소, 담당자 및 전문분야와 같은 하청업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요청에 따라 당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하청업체는 본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동물 복지

당사는 당사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동물들이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 복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당사의 정책은 www.tapestry.com/investors/의 [글로벌 비즈니스 윤리 프로그램\(Global Business Integrity Program\)](#)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고용 관행

근로시간: 당사는 국가별 기준 및 법에 규정된 법적 최장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업체와 고의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동 노동: 국가별로 “아동”의 법적 정의가 다를 수 있지만, 당사는 고의로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강제 노동: 당사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해 계약, 강제, 감금 또는 취득한 비자발적 노동 또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 또는 완성품을 취급하는 공급업체와 고의로 거래하지 않으며 그러한 노동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신국 공개: 당사는 당사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가 모든 노동자의 신원 확인 서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문서에는 반드시 출신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별: 당사는 개인의 특징이나 신념이 아닌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관계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나이, 인종, 피부색, 신조, 출신 민족, 국적, 외국인 지위, 시민권, 사회적 출신, 성별, 종교, 혼인 여부, 성 지향성, 성 정체성, 유전적 특징, 출산 여부, 군필 여부, 장애나 정치적 신념 또는 해당 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타 법적으로 인정된 보호 기준 등 개인적인 특징이나 신념을 기준으로 직원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희롱 및 징계 관행: 태피스트리의 공급업체는 모든 직원을 존중과 위엄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직원도 신체적인 처벌, 물리적, 성적, 정신적 또는 언어적 희롱이나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징계 관행으로서 벌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당사는 직원들의 보건과 안전을 생각하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공급업체들과 거래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공급업체는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하며, 직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모든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합 및 단체 교섭의 자유: 공급업체는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이 선택한 노동자 단체에 참가하고, 원하는 경우 단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제조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 교섭을 하려는 노동자를 위협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본 항은 정규직 또는 시간제 노동자, 교대 근무자, 이주 노동자 및/또는 계절 노동자, 도급업자, 컨설턴트 및 기타 보상 수단으로 고용된 모든 유형의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태피스트리는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 및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공급업체를 우대합니다.

1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당사는 공급업체가 해당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보안 및 통제 정책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13. 기밀정보, 독점정보, 개인정보

당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정보입니다. 공급업체는 당사의 기밀정보 및 독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직원들에게만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공 장소에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언급을 피함으로써 기밀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당사와 공급업체 간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의 기밀정보와 당사의 직원, 사업 파트너, 고객의 기밀정보를 발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유지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잘못 공개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4. 정확한 경영실적 자료

정보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보고하는 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모든 거래는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급업체들이 이러한 정보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제공 혹은 입력하리라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의 재무 보고 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영실적 자료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15. 이해 상충

당사와 그 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위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득이 아닌 건전한 사업적 판단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당사와 당사 혹은 공급업체 직원 간의 또는 당사와 당사 혹은 공급업체 직원 가족 간의 모든 관계나 거래 등 개인과 당사 간의 이해상충을 야기시키거나, 야기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직원, 고객, 공급업체, 일반 대중이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을 즉시 공개하는 것입니다. 태피스트리 직원 및 태피스트리와 거래하는 공급업체는 실제로 발생했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의 사안을 당사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16. 컴플라이언스

당사의 공급업체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는 감사를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물리적인 근무 조건 외에 보건 및 안전 관행 평가를 위한 공장/회사 시찰, 잠재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직원과의 비밀 인터뷰, 모든 관련 문서(급여, 시간 기록, 직원 연령 및 출신국 확인, 라이선스, 증명서, 면제 사항 등) 검토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공장 방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이슈가 발견되는 경우, 당사는 모든 공급업체가 불이행 사안을 지체없이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리라 기대합니다.

17. 커뮤니케이션

태피스트리의 공급업체는 본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그 직원 및 관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18. 인지도 위반 사례

본 공급업체 윤리강령에 언급된 정책을 비롯한 본 윤리강령의 위반 사례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 공개해야 하는 사항, 당사의 기준이나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다면 법무팀(212-615-2436)으로 연락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사안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원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 태피스트리 윤리 및 준법 보고 시스템 웹사이트(<http://www.tapestry.ethicspoint.com>)를 통하거나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1-800-396-1807 또는 www.tapestry.com/investors/의 [이사회에 문의하기\(Contacting the Board\)](#) [섹션](#)에 제공되는 해당 지역의 전화번호(international phone numbers)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피스트리와 거래를 한다는 것은 당사의 공급업체 윤리강령을 숙지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당사와 거래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본 공급업체 윤리강령을 준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공급업체와 거래 관계를 종료할 권리를 갖습니다.